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08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이광희·허성무·주철현

김문수 • 박해철 • 김승원

박지원 • 황명선 • 박용갑

황정아 • 이상식 • 김우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을 10 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투·개표 사무를 직접 담당하는 투표관리 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수 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투·개표 관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의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수당이 실제 근무시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액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보다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투·개표 관계자가 수당보다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

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2제3항제8호 신설 및 같은 조 제4항).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2조의2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8. 제146조의2에 따라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조에 따른 투표사무원, 제148조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 및 제174조에 따른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식비
- ④ 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당보다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 1.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과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2. 제3항제8호에 따른 투표관리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수당은 9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費用은 國家 또는 地 方自治團體가 候補者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 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146조의2에 따라 투표관리 <신 설> 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제147 조에 따른 투표사무원, 제148 조에 따른 사전투표사무원 및 제174조에 따른 개표사무원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 ④ 제3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 에 따른 수당은 다음 각 호에 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수당보다 「최저임금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 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 무시간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 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

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 을 지급한다. 에게만 지급한다.

- 1.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 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과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 간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 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 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 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만 지급 한다.
- 2. 제3항제8호에 따른 투표관리 관·사전투표관리관·투표사 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 표사무원의 수당은 9만원으로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